

『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7월 5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김재우, 박교상, 이지연, 장미경,
홍난이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9일

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시의회 의원 이 선 우

나. 제안이유

-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,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공모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의회보고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4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7. 6. ~ 7. 12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비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사업의 적법성·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한층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, 같은 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